



# SW·저작권 동향리포트

<제2024-21호> 2024년 11월 10일

## 정책/제도

### 페어소스(Fair Source) 라이선스의 등장

#### ■ 개요

- 30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(이하, SW) 스타트업 센트리(Sentry)가 상용 SW와 오픈소스 SW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‘페어소스(Fair Source)’라는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<sup>1)</sup>

\* 페어소스란? 오픈소스와 클로즈드소스(closed source)의 중간 지점으로, 핵심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 센트리는 GitHub의 설립자 중 한 명의 개발자 도구 회사인 GitButler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이 모델을 도입. 이 스타트업들은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해결하고자 새로운 페어소스 라이선스 모델을 채택하기 시작

- (페어소스 라이선스란?) 독점 SW와 개방형 SW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핵심 제품의 코드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면서도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직접 경쟁을 막는 라이선스 모델

- 이 모델에는 Functional Source License(FSL)\*와 Business Source License(BUSL)\*\*가 포함되며, 일정 기간 후에 완전히 오픈소스로 전환됨

\* Functional Source License (FSL):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경쟁 조항과 같은 특정 제한이 있는 공공 공유를 허용하는 페어 소스 라이선스의 한 유형. 지정된 기간(기본 2년) 후에 코드는 완전히 오픈소스로 전환되어 상업적 보호와 오픈소스 개발 정신을 조화시킴

\*\* Business Source License (BUSL): 이 라이선스는 기업들이 핵심 비즈니스 가치를 통제하면서도

1) Zo Ahmed, "New "fair source" movement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open source and proprietary licensing", Techspot, Sep 24, 2024, <<https://www.techspot.com/news/104836-startup-unveils-fair-source-bridge-gap-between-open.html>>

사용자에게 상당한 접근성과 자유를 제공하고, 일정 기간(기본 4년) 이후 완전한 오픈소스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줌

## ■ 주요내용

### 1. 오픈소스 라이선스

- (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점) 개발비용 절감, 호환성, 개발사이클 단축, 신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음
  - (호환성) 상용 SW는 SW공급자에 의존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특정 SW에 락인 되어 버리는 상황이 잦은 반면, 오픈소스는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 다른 프로젝트로 변환의 여지가 있음
  - (개발사이클 단축)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빠른 사이클로 배포. 버그가 리포팅되면 수많은 개발자들이 달려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버전이 배포
    - \* 동일한 이유로 새로운 기능이 빠르게 출시되며 커뮤니티에서 발견된 보안취약점은 빠른 속도로 패치가 되어 공개됨
  - (신뢰성 향상) 오픈소스를 도입한 전세계의 수많은 사이트들이 테스트 베드가 되어 프로젝트의 신뢰를 높여줌
- (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범주)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가능. 아래의 구분대로 비슷한 라이선스 의무가 부과되고, 소스코드 공개 의무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방식을 사용<sup>2)</sup>
  - (Permissive) 허용적인 라이선스들로, BSD, MIT, Apache 등이 있음. 오픈소스 SW를 사용하고 재배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최소한임. 이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스의 귀속 통지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
  - (Weak Copyleft) SW 사용 시 소스코드의 일부를 공개해야 하는 라이선스로 LGPL이 대표적. 일반적으로 수정된 오픈소스 SW를 재배포할 때 원본 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수정된 소스코드도 함께 공개해야 함
  - (Strong Copyleft) 오픈소스와 결합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구속력이 가장 강한 라이선스로, 대표적으로 GPL과 SSPL이 있음

2) A6K 개발노트 블로그, <<https://hbase.tistory.com/454>>.

- (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한계) 오픈소스 라이선스에는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,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려 금전적 손해를 입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기도 함
-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고, 모든 라이선스를 다 분석할 수는 없어 개발자들이 이런 라이선스 조항들을 읽고 해석하기는 어려움

## 2. 페어소스 라이선스의 필요성

- 오픈소스 SW는 무료로 제공되는 장점이 있지만, 그 사용 및 배포 조건에 따른 법적리스크와 상업적 사용 제약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며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 됨
- 센트리의 오픈소스 책임자인 Chad Whitacre는 실제로, 라이선싱 조건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심각한 제한이 있다고 언급<sup>3)</sup>
- 전 세계 대부분의 SW는 여전히 Closed Source로, Fair Source를 통해 기업이 이러한 하위 수준 인프라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핵심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

## 3. 페어소스 라이선스 이용방식 및 핵심요소

- (개요) 페어소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와 상용 SW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라이선스로,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협업 친화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
- 무료 사용자 대상으로는 오픈소스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상업적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,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가 자원을 아끼면서도, 대규모 상업적 사용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임
- (과금 방식) 사용자 수에 따른 과금 형태. SW의 사용자가 일정 인원 (보통 10명 이하) 이하일 경우 무료로 제공되지만, 그 이상이 SW를 사용할 경우

3) Paul Sawers, "Some startups are going 'fair source' to avoid the pitfalls of open source licensing", Sep 22, 2024, <<https://techcrunch.com/2024/09/22/some-startups-are-going-fair-source-to-avoid-the-pitfalls-of-open-source-licensing/>>

비용을 청구함으로써 SW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함

- 예를 들어, 해시코프(HashiCorp)와 같은 기업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사용자가 발생하자, 페어소스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상업적 사용자를 통제하고 수익을 확보

○ **(핵심규정)** 모든 페어소스 라이선스는 세 가지 핵심규정을 준수해야 함.

- ① 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고, ② 제3자가 '최소한의 제한'을 두고 사용, 수정, 재배포할 수 있어야 하며, ③ 미리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전환되는 지연된 오픈소스 공개(delayed open source publication, DOSP)\* 규정이 있어야 함<sup>4)</sup>

\* 코드가 완전한 오픈소스가 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픈코어모델(Open-core model)과 구분됨. 오픈코어는 주로 SW제품의 기능제한 버전을 무료오픈소스 SW로 제공하고, 상용버전 또는 추가기능을 사유 SW로 제공하는 방식임

○ **(핵심요소)** 라이선스의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음<sup>5)</sup>

- (경쟁금지 조항) 일부 변형된 라이선스는 경쟁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, SW를 경쟁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. 이는 SW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
- (라이선스 부여) SW를 사용, 수정, 파생 작품 생성, 공개적으로 실행 또는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. 단, 사용이 허용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
- (재배포 규칙) 사용자는 FSL 약관 사본을 포함하는 한 SW를 재배포 가능. SW와 함께 제공된 모든 저작권 고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,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출처와 사용 약관이 항상 투명하게 유지됨
- (특허보호) SW의 새 버전이나 수정본을 개발하는 사용자는 원래 라이선스 제공자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지만 허용된 목적에 한함. 사용자가 SW에 대한 특허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특허 라이선스는 즉시 종료됨
- (보증 및 책임) SW는 “있는 그대로” 제공되며, 즉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이 없으며, 라이선스 제공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

4) 센트리 블로그, <<https://blog.sentry.io/sentry-is-now-fair-source/>>.

5) Fernando Adrián García Marc, “Fair Source: An Alternative or An Evolution of Open-Source Software Licensing?”, Linked In, Sep 26, 2024, <<https://www.linkedin.com/pulse/fair-source-alternative-evolution-open-source-garc%C3%ADa-marc-ah58f/>>

- (상표 및 브랜딩) 라이선서의 상표, 상호 및 서비스 마크 사용에 제한을 가함. 사용자는 SW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라이선서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지만, 이러한 브랜드 요소를 보증이나 제휴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

#### 4. 페어소스 라이선스의 이점

- (오픈소스의 제약 우회) 전통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문제를 피하면서 기업들이 오픈 SW 개발과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
  - 예컨대,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상업적 사용에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, 특히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는 SW를 배포할 때 수정된 소스코드도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,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
    - \* GNU GPL(General Public License) : 자유소프트웨어재단(FSF)에서 1989년에 만든 오픈소스 SW에 대한 라이선스로 소프트웨어의 실행, 연구, 공유, 수정의 자유를 최종 사용자에게 보장
  - 페어소스는 소스 코드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, 기존 오픈소스 모델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극복
- (SW저작물의 공유와 보호) 상업적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, 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배포하면서도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공유와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
- (불법사용 문제의 개선) 일부 스타트업은 상업적 사용자가 자신의 SW를 대규모로 사용하면서도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으나, 페어소스는 상업적 사용 규모를 제한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

#### 5. 페어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비판

- (법적 불안정성) ‘최소한의 제한’ 과 같은 조항의 범위와 의미가 불분명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음
  - 라이선스를 광범위하게 도입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뿐 아니라 앞으로의

혁신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

- (경쟁 금지 규정의 한계) 경쟁제품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는 동 규정이 있는 한 이전의 ‘소스 사용 가능(source available)’ 라이선스와 유사함. 여기에는 원래 SW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됨
- (공유의 가치 훼손) 오픈소스 옹호자들의 경우, 페어소스는 단순히 ‘브랜딩’ 일 뿐이며 기업이 사유(proprietary) SW라는 명칭을 피하면서 기존의 오픈소스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‘공유의 가치’ 라는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제기
  - 혹자는 “페어소스 라이선스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모호한 부정경쟁 금지 규칙에 따라 차별을 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니다” 고 지적

## ■ 시사점

- 페어소스는 기업들이 오픈소스 정신의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핵심 비즈니스 가치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브랜딩 실험임. 이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이 기술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채택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
  - 단기적으로 법적 모호성과 보수적인 의견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보다 포용적인 오픈소스 생태계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음
  - 페어소스 라이선스가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경우, 전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. 페어소스의 성공은 커뮤니티의 수용과 적용규제의 확립에 따라 좌우될 것
- 페어소스 라이선스의 도입은 저작권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, 특히 SW라이선스 방식의 다양화로 SW저작권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, 저작권 보호 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<sup>6)</sup>
  - SW저작권 보호의 전문화가 더욱 요구될 것

6) 한국저작권위원회, “저작권 이슈브리프 (2024-10-2호)”, 2024.10., 35면.

## 참고자료

- 한국저작권위원회, “저작권 이슈브리프 (2024-10-2호)”, 2024.10.
- Fernando Adrián García Marc, “Fair Source: An Alternative or An Evolution of Open-Source Software Licensing?”, Linked In, Sep 26, 2024.
- Paul Sawers, “Some startups are going ‘fair source’ to avoid the pitfalls of open source licensing”, Sep 22, 2024.
- Zo Ahmed, “New ‘fair source’ movement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open source and proprietary licensing”, Techspot, Sep 24, 2024.
  
- A6K 개발노트 블로그, <<https://hbase.tistory.com/454>>.
- 센트리 블로그, <<https://blog.sentry.io/sentry-is-now-fair-source/>>.
- 페어소스 라이선스 홈페이지, <<https://fair.io/>>.

SW·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, 25일에 발간됩니다.  
다음 SW·저작권 동향리포트 <제2024-22호> 발간일은 11월 25일입니다.